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65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1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7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11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조정사유

○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·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
○ 기금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
○ 기금 지급은 연 2회(상 · 하반기 각 1회)

○ 기금 지급인원 및 금액은 27명 10,000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기금은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총 1억원과 1998년도에 1천만원, 도합 1억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, 1993년부터는 적립금 발생 이자수입으로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2001년 6월 30일 현재 적립원금 1억1천만원, 이자수입 16,444천원, 총 126,444천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.

○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2000년도에 발생한 기금 이자수입으로 2001년도에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생 27명 범위 내에서 10,000천원의 장학금을 상·하반기 각 1회씩 년 2회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기금운영을 조례에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

○ 기금예치 상황, 장학생 심사기준, 장학생 선정방법, 자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대상자는 몇 명이며,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는지

○ 답 :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, 가능한 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0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